

Issue No.
2014-7
28 JULY 2014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엔 주요 소식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본에 위안부 문제 공식 사과 및 배상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위안부 문제 및 이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유린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이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규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비롯한 6개국의 국가 보고서등을 심의했으며, 15일-16일 양일간 진행된 일본 국가 보고서 심사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체계화된 성 노예 문제가 가장 끔찍한 성 노예 범죄이며, 이들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일본정부가 이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및 기타 양자 조약을 통해 법적 책임 및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조약의 해석, 특히 책임 및 의무의 범위와 핵심내용에 대해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뒤흔들기 위한 재검증을 시도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우회적인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위안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본군의 강제적인 동원방식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어왔으며, 최근 일본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유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를 통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및 시위를 규제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증오발언 및 시위는 2012년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금지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물리적 충돌 여부만 감시할 뿐, 시위 자체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한다는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에 위배된다.

국가인권기구 소식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연내 개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연내 개소할 예정이다. 사무소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조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유엔에서 5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한국 내에서 2-3명을 채용해 7-8명 규모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며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무소는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인천 송도에 개설될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단체들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사무소를 서울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은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클 커비)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것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대북 인권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사무소 개소의 견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여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명할 인권사무소가 한국 내에 설치되게 되었다.

한편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대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루퍼트 콜 빌 대변인은 한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민사회와 단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이며, 사무소는 유엔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 소식

해외 8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 연수



우리 위원회는 한국 국제 협력단 (KOICA)과 공동으로 6월 19일부터 7월 9일에 걸쳐 가봉, 나이지리아, 네팔, 라오스, 몰도바 등 해외 8개국 공무원 15명을 초청하여 인권정책발전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해마다 각 국의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여섯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연수과정에는 국가인권기구 및 인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인권, 국제인권시스템, 국가인권기구, 인권과 개발 등에 대한 모범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연수자들은 국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등 인권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경험을 쌓고, 각 기관들의 활동상을 경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기획특집 (인권 조약)

2013년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인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국제인권동향 기획특집으로 매달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이주노동자협약

이주노동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2억 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세계화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협약은 1990년에 채택되어 다른 인권조약에 비해 오랜 기간이 경과한 2003년 6월 1일에야 발효하였다.

추가적인 비준도 지체되어 2014년 7월 현재 47개국이 비준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비준한 국가의 대부분도 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이고, 이주노동자 유입국은 거의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행사달력

2014년 8월 UN 주요회의 일정

일자	회의명	비고
8/11-15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13차 회기	
8/11-29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86차 회기	
8/28	인권이사회 조직회의 제27차 회기	
8/28-29	임의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제70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29 sygraceh86@nhrc.go.kr